



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(토목부장)

(경유)

제목 “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설치공사”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
최종결과 통보(제11차)

1. 2018년도 제11차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관련입니다.
2. 토목부 - 13600호(2018.8.3.)에 따라 「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설치공사」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결과 보완보고서에 따른 최종결과를 통보하오니,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라며, 추가점유(폭, 면적)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울시(교통운영과)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3. 또한, 출퇴근시간대(오전 6~9시, 오후 5~9시) 공사차량 진출입을 금지하오니 이점에 유의하시고, 공사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

-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고 공사 진행도중 교통·보행 민원이 발생한 경우, 공사시행자(시공사, 감리사, 현장소장, 감리단장) 패널티 부여 및 업무담당자 문책 등 각 기관별 감사담당실로 통보 조치합니다.
-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함으로써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공사장은 자치구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부서에 통보하여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합니다.

붙임 최종 자문결과 1부. 끝.

서울특별시
시장인



주무관 **백바름** 교통운영팀장 **김옥희** 교통운영과장 08/03 **강진동**

협조자

시행 교통운영과-12993 (2018.8.3.) 접수 토목부-13674 (2018.8.3.)
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(서소문동) /
전화 2133-2466 /전송 / pblqw6293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

최종 자문결과 통보서

(2018년 제11차)

【 공사 개요 】

공사명	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설치공사	공사시행자	도시기반시설본부
대상도로	노들로	차로수	8개 차로
점용기간	2018.9월 ~ 2020.8월	점용차로수	현황 차로수 유지
점용시간	주·야간	자문일자	2018.07.11
담당부서	토목부	시공회사	삼성물산주식회사

【 지문 내용 】

자문 결과	조건부 시행
수반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『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설치공사』에 따른 <u>교통소통대책 (자문회의결과 보완보고서)에 의거 공사를 시행</u>하기 바람 ○ 공사현장에서는 교통소통대책 보고서를 상시 비치하도록 하며, 현장상황에 의해 차로를 임의로 점용하지 말고,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지점별, 단계별 차로점용계획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바람 (<u>출퇴근시간대 공사 차량 진출입 금지 : 오전 6~9시, 오후 5~9시</u>) ○ 공사 관련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추가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고 공사차량의 진출입시 등 반드시 교통통제수를 배치하여 차량을 유도하기 바람 ○ 완화구간에 급작스런 차로변경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, 변경한 경로는 도류화시설이나 임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<u>공사시공자 및 감리회사 등이 관'리'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호울타리 외에 사이렌, 경광등, 진동(노면요철처리) 등과 같은 시설을 보완 설치하기 바람 ○ 단계별 상황에 맞게 주의구간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바람 ○ 공사시행 중 부득이하게 수립된 교통소통대책(점용기간 포함)이 변경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하지 말고, <u>사전에 교통운영과와 변경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협의 후 공사를 시행</u>하기 바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시적이라도 도로 및 보도를 무단 점유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○ 허가 또는 승인 관련부서(관할구청 토목과 및 도로과, 서울시 교통운영과 등)의 현장 점검시 지적된 공사 중의 교통소통 및 안전상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조치하기 바람 ○ 공사시행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결과(해당시)를 별도로 <u>교통운영과에 서면 보고</u>하기 바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문회의 심의결과와 동일한 경우, 유선 통보 후 공사 시행 -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부득이하게 교통소통대책이 변경된 경우, <u>교통운영과와 변경된 사항에 대해 최종 협의 후 공사 시행</u> ○ 공사감독부서에서는 공사현장에서 교통소통대책의 준수 및 공사일정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시공자 및 감리회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○ 점용기간이 <u>자문결과 대비 20% 이상 연장될</u> 것으로 예견될 시에는 당초 점용 만료일 45일전 까지 점용기간 연장에 관하여 교통운영과와 협의하기 바람 ○ 도로점용 개시 및 완료시에 우리시 교통운영과에 유선으로 통보하기 바람 ○ 6개월 이상의 공사현장은 공사 착수 후 CCTV를 설치하고 교통운영과내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 시켜야하며, 대형공사장은 준공 70%전 도로복구계획을 교통운영과와 사전협의 및 심의 상정해야함 <p>(Tel 02-2133-2466, Fax 2133-1053)</p>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위원장